

등록번호	문화체육과-1834
등록일자	2015.2.6.
결재일자	2015.2.6.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생활체육팀장	문화체육과장	복지문화국장
이정은	이은미	이현근	02/06 이태묵
협 조			

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서대문구
문화체육과

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주요변동 사항

구분	2014년	2015년	비고
지원연령	만5세~만19세 (1995~2009년생)	만5세~ 만18세 (1997~2010년생)	※민법상 성인연령 (만19세)개정
최 소 지원기간	3개월(권장사항)	6개월(의무사항)	
권 장 지원기간	-	12개월	
권 장 최대지원기간	-	누적24개월 (한도부여기간 기준/ 기존지원 포함)	
수급자격 확인기간	약 1주일 소요	실시간	
정 보 제 공 원	보건복지부 (수급자격 정보)	보건복지부(수급자격 정보) 행정자치부(인적사항 정보)	
통합문화이용권 중복수혜	중복수혜 가능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본인에 한해 중복수혜 불가	
단기스포츠 강좌신청	기초자치단체→공단	기초자치단체→광역시자치단체	
서울시 예산배분 기준	① 기초생활수급자(만5세~만19세) 인원수 70% ② 사업실적 30% (자치구별'12년~'13년10월 기준 집행률)	① 기초생활수급자(만5세~만18세) 인원수 70% ② 사업실적 30% (자치구별'12년~'13년 집행률) ※2016년도 예산배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수 70% + 기초생활수급자 수혜실적 30%)	
예 산	47,763천원 (33,435천원/7,164천원/7,164천원)	55,000천원 (38,500천원/8,250천원/8,250천원) ※ 전년 대비 15% 증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 ▷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체육시설 강좌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 ▷ 유·청소년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등에 대한 보조),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598호(2014.12.12)
- 서울시 체육진흥과-1001(2015.1.26) 【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 ※ 2009년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시작

II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1월~12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정내 만5세~만18세 유·청소년 (1997.1.1~2010.12.31 출생자)
 - ※ 신청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 동일연령대까지 확대 가능
 - ※ 차상위범위 : 각개별법에 의한 차상위 의료,자활,장애,한부모가족,우선돌봄
- 사업장소 :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 등록된 공공 및 사설 체육시설 30개소
- 지원내용 : 체육시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인1강좌, 최대7만원)
- 지원기간 : 최소 6개월이상(의무사항) ~ 최대 1년까지
- 예산규모 : **55,000천원** (38,500천원/8,250천원/8,250천원)
 - ※ 정률매칭 : 국비 70%, 시비15%, 구비15% (2011년부터)
- '15년 목표 : **집행률 100%**

III

2014년 사업실적

■ 예산집행실적

(단위:천원)

구분 년도	예산				집행				집행률 (%)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국비	시비	구비	
'14년	47,763	33,435	7,164	7,164	47,763	33,435	7,164	7,164	100
'13년	45,552	31,886	6,833	6,833	45,552	31,886	6,833	6,833	100
'12년	45,092	31,564	6,764	6,764	44,474	31,132	6,671	6,671	99
'11년	38,933	27,253	5,840	5,840	30,900	21,630	4,635	4,635	79

■ 대상자 및 수혜자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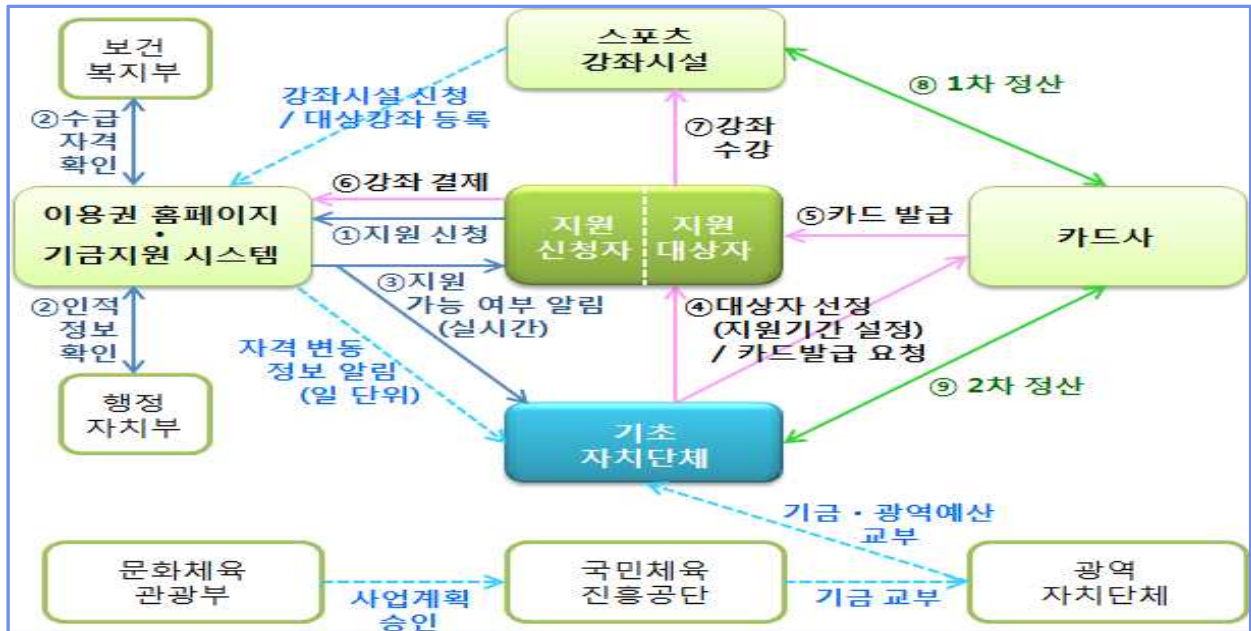
구분	대상자	신청자	실수혜자	계층별 수혜자		비고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14년	951	166	98 (724)	94 (680)	4 (44)	()연간누적
'13년	812	172	93 (682)	84 (630)	9 (52)	
'12년	869	133	94 (669)	67 (515)	27 (154)	
'11년	997	136	51 (558)	-	-	

■ 운영결과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체력 향상에 기여 및 삶의 질 향상
 - ※ 2013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내용
- **2년 연속 집행률 100%**
 - 대상가구별 사전 모집 안내문 및 문자 발송
 - 매월 개별 안내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집행률 관리
- 신규 수혜자 수혜율 감소 ('13년 56%→'14년 37%)
 - '13년도 신규 수혜자가 56% 증가함에 따라, '14년도 신규 수혜자 비율(35명)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선정자 전원이 누적수혜 24개월 미만

1. 사업추진 체계

■ 업무처리체계



구 분		주 요 업 무
광역 자치단체 (1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 단위 운영총괄 및 사업홍보 관할 기초자치단체 대상 지원금 배정·교부 및 실적관리 등
기초 자치단체 (22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단위 운영총괄(이용현황 모니터링·현장조사정산 등) 사업홍보 / 이용자 모집선정 및 지원기간 설정 / 강좌시설 선정관리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총괄(사업계획 승인·확정, 사업 관리·감독) 유관부처 업무협조 / 대국민 사업홍보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 수립 / 사업 개선·홍보 / 이용실적 관리·점검 자치단체 업무 지원 / 상담센터 운영
	정보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권 시스템 관리·개선(홈페이지·기금지원시스템 등)
	기금평가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만족도 조사
카드사(신한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드 발급, 문의 응대 / 이용대금 정산(강좌시설·기초자치단체)

2. 대상자 모집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만5세~만18세 유·청소년
(1997.1.1~2010.12.31 출생자)

※ 신청자가 없을 경우, 개별법에서 정하는 동일 연령대 차상위, 한부모가족까지 확대가능

■ 지원내역

- 금액 : 1인당 1강좌 월 최대7만원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기간 : 1인당 최소6개월(의무사항) ~ 최대 12개월(권장사항)

※ 1인당 권장 최대지원기간 : 누적 24개월

※ '15년 7월 이후 선정자는 최소 지원기간(6개월) 의무적용 배제

※ **통합문화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 사전안내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구 안내문 및 문자 발송

※ **총 673명, 394가구 (2014.12.9 사회복지과 공문 기준)**

■ 모집공고 : 구 홈페이지 (2014. 12. 8)

■ 모집신청 : '14.12.15 (월) ~ 12.28 (일) 전국 동시 신청

■ 선정기간 및 지원기간 부여 : '14.12.29 (월) ~ '15.1.4(일)

※ '15년도 신규 선정자는 카드 발급기간 고려하여 지원기간 부여(2월부터)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온라인 신청

- 등록사항 : 신청인 수급자 정보, 세대주 정보, 카드발급자 정보 등

■ 선정기준

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미수혜 신규신청자

②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기수혜자

③ 차상위 중 미수혜 신규신청자 ④ 차상위 중 기 수혜자 順으로 선정

※ 동일순위 내에서는 다자녀(3자녀 이상) · 다문화장애인 가구 신청자 우선 고려

※ '16년도 서울시 예산배분기준 (기초생활수급자수 70% + 기초생활수급자 수혜실적 30%)

3. 대상자 및 집행률 관리

■ 대상자 관리

- 대상자 및 집행률 관련 **엑셀 관리대장 별도 작성 관리**
- 매월 대상자 결제내역 모니터링 후, 개별 안내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발송
- 매년 초 신규 선발자 중 미사용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선정자 전원에 대한 카드발급 여부 확인 및 사용방법에 대한 사전 안내전화 및 문자 발송('15년 1월)

■ 집행률 관리

- 분기별 필수 집행률 (1분기:25%, 2분기:50%, 3분기:75%, 4분기:100%) 준수
- 분기별 필수 집행률 준수로 예산의 과도한 조기소진 지양

4. 강좌시설 선정 및 관리

■ 최대한 다수의 강좌시설 확보 : 이용자 선택권·접근편의성 제고

- 미가입·신규 스포츠 강좌시설 대상 이용권사업 안내 및 가입 권유
- 특정 종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강좌이용권 시설대상 사업홍보 강화

■ 강좌시설 현장점검 주기적 시행 :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유도

■ 신청 자격·방법

- 신청자격 :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강좌시설주
 - 스포츠강좌가 가능한 공공시설·시설체육관 등
 - 스포츠종목 외 강좌시설 신청·선정 불가 (국어·영어·수학·음악·미술·서예·한자·풍물·블록조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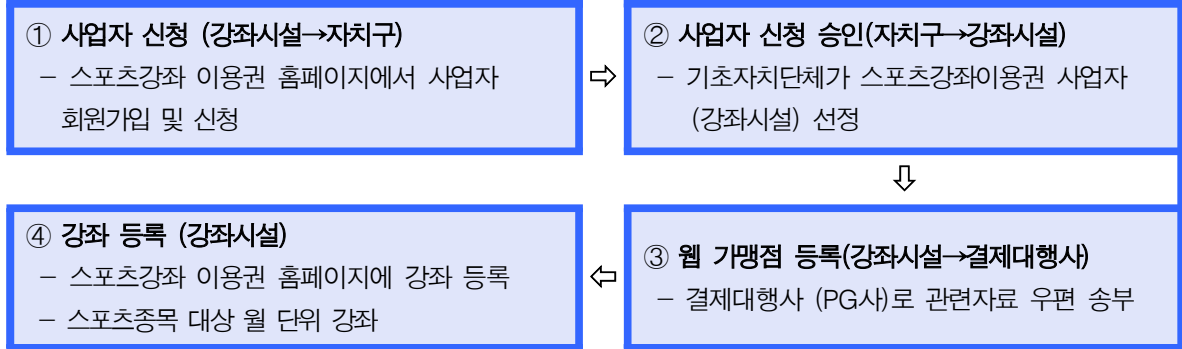
■ 신청방법 : '스포츠이용권 시설'로 회원가입 및 신청

- 신청경로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 승 인 : 자치구 최종 선정

■ 업무 흐름도

〈 사업자 신청·선정 절차 〉



■ 강좌시설 선정 고려사항(자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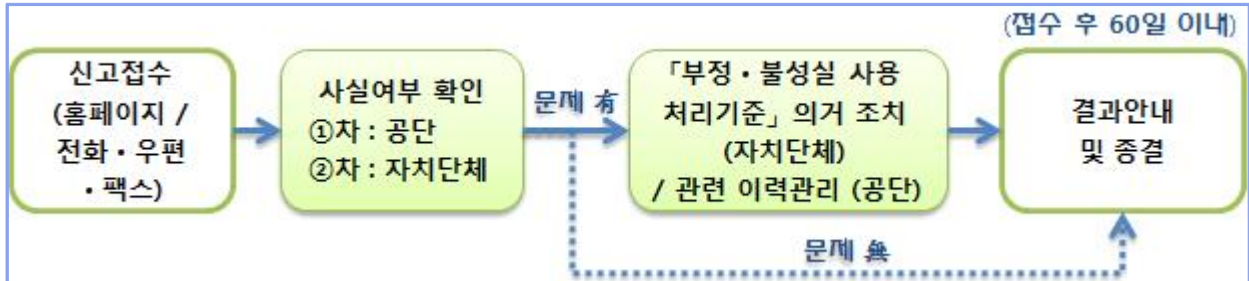
-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여부
 - 사업주·시설명·운영지역 등 단순변경은 기존 운영기간 인정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시설 안전성(현장방문 및 확인)
- 월 강습형태의 스포츠강좌 제공 여부
- 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부지 확보 여부
- 서비스 제공능력 보유 여부(인력·경험·장비 등)
- 책임보험 가입 여부
- 무용 강좌 제공시설의 경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무도(舞蹈)학원·무도(舞蹈)장 해당 여부
 - 무도(舞蹈) : 무예·무술을 의미하는 무도(武道)가 아닌 사교·성인 댄스
 - 사교·성인 댄스 : 지루박·부르스·트롯트·탱고 등
 - 관련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5. 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방지

- 목 적 : 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를 통해 사업 투명성·효율성·지속가능성 제고

■ 부정사용 신고센터

- 안내매체 : 이용권 홈페이지(부정사용 신고센터, 이용권 신청메뉴), 각종 안내서·리플릿, 이용권 카드('15년 신규발급분) 등
- 신고 처리절차



○ 신고센터 운영

신고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 이용권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전화(이용권 상담센터), 우편·팩스(공단) • 접수내역 : 기금지원시스템 등록(공단)
신고내역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여부 1차 확인 및 소관 자치단체 안내(공단) • 사실여부 2차 확인 및 답변 등록(자치단체) : 기금지원시스템 * 전체 신고·답변 내역을 기금지원시스템에서 관리
부정확인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의거 조치 : 자치단체 • 부정·불성실 이용자 및 강좌시설 이력관리 : 기금지원시스템(공단) 향후 특정기간 이용제한 설정 등
신고자 대상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접수 시 : 휴대전화문자·이메일(접수여부) • 답변 등록 시 : 휴대전화문자(답변등록여부)·이메일(답변내용)

■ 카드 발급이용 시 문자 알림 의무화

- 카드 발급신청·배송·수령·결제·결제오류 시 명의자 대상 휴대전화문자 발송(공단)
 - 타인 부정사용 시 즉시 인지 도모(알림 거부 불가)
 - 문자발송 비용 : 신용카드사 부담

■ 불성실 이용자·강좌시설 대상 조치

○ 조치기준

구분	내용	조치사항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제 후 적절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결석 사유(사고·입원 등) 미설명 - 2회 이상 연락에도 적절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좌시설 : 기초자치단체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수강료 환수 등 강좌시설 대상 불이익 조치 없음 -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 기초자치단체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지원중단 :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중 미결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중 누적 2회 미결제 시 기초자치단체가 지원중단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치단체 : 결제현황 매월 조회 (기금지원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관리] - [월별결제조회] ● 기초자치단체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 누적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 사고입원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p>(지원중단 : 선택사항)</p>
강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권 강좌시설로 부적절한 경우 (기초자치단체 판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좌 부실 운영 - 선정 당시와 다른 시설 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에 따라 조치

■ 스포츠강좌 등록시설 현장점검

- 목 적 : 스포츠강좌 부정사용 및 시설 안전사고 예방 등
 - 기 간 : 2015. 1월 ~ 12월 중
 - 대 상 : 스포츠강좌 등록시설
 - 점검방법 : 생활체육팀 직원 점검조 (2인1조) 편성하여 현장 점검 실시
- ※ 필요시 시, 구 합동 점검 실시

○ 주요점검내용

- 강좌개설, 수강료, 사업자등록정보 등
- 시설 안전성 및 책임보험 가입여부
- 강좌이용자 출석관리(출석체크대장 비치 및 출석체크 여부)
- 기타 사업 운영 우수사례 파악 및 개선 요구사항 접수

6. 사업홍보

■ 적극적인 사업홍보로 이용혜택 편중 해소 및 신규사업자 확대

-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통해 사업자 다수 확보 및 신규 미수혜자 적극 발굴
- 구 홈페이지 모집공고 후, 대상 모집 및 선정

V 행정 사항

■ 문화체육과

- 2015년 대상자 명단 요청 및 통보 (2014.12월): 문화체육과⇔사회복지과
- 대상자 사전 안내문자 및 우편물 발송(2014.12월)
- 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모집 공고(2014.12.8)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2015.2월) : 문화체육과→서울시
- 정산관리 : 정산(매월 17일), 구 대금 입금일(매월 25일)
- 추진실적 제출 (매월 10일한) : 문화체육과→서울시
- '14년도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2015.3.10한) : 문화체육과→서울시

■ 동 주민센터

- 컴퓨터 사용불가능 신청자 동주민센터 컴퓨터 사용 협조 및 안내
-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통합문화이용권 중복 수혜 금지에 따른 처리
 -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자가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 취소 신청서 접수 및 문화체육과 송부(2015.2.9~)
- ※ 단 취소는 '15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이력이 없는 신청자에 한함

- 붙임 : 1. 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계획 및 지침 (국민체육진흥공단) 1부.
2. 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계획 (서울시) 1부.
3. 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모집공고문 (서대문구) 1부.